

문서번호	안전치수과-4905
결재일자	2015.3.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안전재난 관리담당	안전치수 과장	안전건설 교통국장		
김재운	최성연	윤석수	03/26 곽병한		
협 조					

- 2015년 상반기 -
특정관리 대상시설 일제조사 계획

2015. 3.

**안전건설교통국
안 전 치 수 과**

- 2015년 상반기 - 특정관리 대상시설 일제조사 계획

우리구 소관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안전등급을 재조정하고, 누락된 시설은 신규로 지정하며, 재난위험시설의 장·단기 해소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코자 함.

I 추진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관리 등)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관리 및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1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등)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정기 또는 수시조사, 세부지정기준
- 2015년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국민 안전처, 안전점검과 -714, 2015.1.15)

II 일제조사 개요

□ 조사기간 및 대상

○ 조사기간 : ' 15. 3. 27. ~ 4. 30.

※ 국가 안전 대진단 기간 내 추진완료

○ 조사기관 : 재난관리책임기관별 시설관리부서(19개부서)

건강정책과(1), 건축과(283), 교통지도과(1), 도로시설과(1), 도시계획과(3), 도시디자인과(10), 문화체육과(96), 보건위생과(10), 복지정책과(5), 사회적경제과(1), 안전처수과(1), 어르신복지과(12), 의약과(12), 일자리경제과(7), 자치행정과(19), 주거정비과(31), 주택관리과(120), 행정지원과(2), 환경과(47)

○ 조사대상 : 구 소관 특정관리대상시설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지침 【별표 1】에 해당하는 시설

□ 추진절차

조 사 절 차	추진기간	추진내용
기본계획 수립 <안전치수과>	'15. 3. 26.	·조사범위 및 소관부서 결정 등 ·조사계획 수립(과, 공단에 통보)
↓		
시행계획 수립 <각 과>	'15. 3. 27.	·조사대상 현황과약 및 자료 수집 ·조사반 편성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등(안전치수과에 통보)
↓		
일제조사 실시 <각 과>	'15. 3. 27. ~ 4. 30.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선별 ·안전점검 및 시설물 상태평가 안전등급 결정 (안전등급 평가매뉴얼 활용)
↓		
조사결과 조치	~ '15. 4.29.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위험요인 해소대책 수립(안전치수과에 통보) ·관리카드 작성 및 국가재난관리정보 시스템에 점검결과 입력, 안전조치 통보 ※ 4.29까지 NDMS 입력 완료
↓		
조사결과 및 해소계획 수립·보고 <각 과 및 공단 → 안전치수과>	~ '15. 4.30.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 작성 및 안전관리 대책 수립·보고 ·장·단기 재난위험시설 해소계획 수립 ※ 4.30까지 안전치수과에 제출

□ 추진방법 : 재난관리부서와 시설관리부서 간 역할분담 추진

- 재난관리부서(안전치수과) : 소관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일제조사계획 수립 및 시설관리부서 통보, 조사결과 취합
- 시설관리부서(각 과) : 소관시설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일제조사
 - 자체 점검반 편성점검(직원 + 외부 전문가) 실시
 - ※ 외부 전문가 점검의 필요성 증대로 이후 과별 예산 편성 요망

□ 주요 점검사항

○ 구조분야(Hardware)

- 건축물이나 토목 구조체 등의 손상, 균열, 위험 여부
- 독극물 등 위험물질이 보관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의 안전기준 적합성
- 법령에 따른 안전관련 시설·장비 등의 설치·보유·운용 상태
- 안전 대진단과 연계, 시설 유형별 안전점검표에 따른 분석점검
- 공공 건축물의 경우 내진보강여부까지 확인 실시

○ 비구조분야(Software)

- 법령에 규정된 안전관련 조직이나 인력의 확보 여부
- 부서소관의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여부
- 안전관련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 부서소관 안전관련 법령이나 제도 등의 적정성 여부
- 제외대상 확인(삭제가 아닌 해제처리) 및 신규대상 시설 발굴, 안전등급 산정
- 관계법률 위반여부 확인, 안전상 손상 및 결함 요인 점검
- 이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 등

Ⅲ

조사방법 및 유의사항

□ 조사반 구성

- 조사반 : 시설별 관리·감독부서
- 구성 : 해당분야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점검 (필요시 안전관리자문단 활용)
 - ※ 전기·가스안전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축구조기술사회, 대학 소속 전문가 등 포함

□ 점검 방법

- 시설 유형별 해당항목 점검 (지침의 별표2 분야별 안전점검기준 참조)
- 기존시설 점검시 : 분야별 육안점검
- 신규지정 시설물, 시설물 상태 변경으로 등급변경이 필요한 경우 :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적용
- 안전등급 평가매뉴얼」에 따라 토목, 전기, 가스, 기계 등 분야별로 관리(30%)·시설(70%) 영역 평가
 -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매뉴얼 참조

□ 일제조사 유의사항

- 관내 특정관리대상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 철저
- 지침 내 **【별표2】** 분야별 주요 안전점검 사항을 기준으로 점검하되, 국가 안전대진단 실시에 따라 각 부처별 시달된 해당 시설별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연계 점검 실시
- 지침 변경(2015.3.11.)으로 제외되는 대상도 조사대상(국가 대진단 관련)이며, 변동사항을 점검후 NDMS에 반영(삭제 아닌 해제)
- 제외 및 추가대상 확인 철저(교량, 터널, 공공업무시설 규정 등)
 - ※ 관리대상으로 지정되어야 함에도 누락되는 시설이 없도록 유의 (2015.2.11. 동작구 사당체육관 신출공사장 붕괴사고에서 특정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함에도 누락되어 안전점검 미실시 사례)
- 공공건축물(청사 등)의 경우 점검시 내진설계 분야까지 확인
- 구분사항 변경 등 변동사항 확인 및 현행화 철저
- 신규 허가인가등록 및 각종 사업으로 신설된 건축물과 교량 등의 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 교량 등 도로시설은

도로교량 및 터널 현황 정보시스템(<http://bti.kict.re.kr>)
또는 e-나라지표(www.index.go.kr) 등에서 대상을 확인하여 지정

○ 공동주택 자체안전점검

- 자체안전점검 대상시설에 해당하면서 참여·동의를 하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동의서 작성·제출 독려
- 공동주택 안전관리자(주택관리사 등)가 교체된 경우 제도 참여, 시스템사용법 안내 등 적극조치

○ 자료 수집

- 일제조사 시 시설물별로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지침」 서식 1에 따라 작성 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
- ※ 첨부서류 : 위치도, 전경사진 및 위험부위 사진, 건축물대장 등

IV

일제조사 결과조치

□ 공통

- 시설관리부서별 인사이동 등에 따른 재난관리시스템 권한 정비
 - 담당자 변경시 변경사항 보고요망
- 기존 및 신규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등급 평가 **【별표3】**
 - 중점관리시설(A·B·C급) 또는 재난위험시설(D·E급)로 지정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조사결과 입력 및 현행화
 - 시설개요(준공년도, 구조, 면적 등), 위치도 및 사진, 장·단기 해소계획, 재난대비체계,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관리책임자 지정 등 입력 및 현행화 철저
 - 지침개정('15.3.11)에 따른 대상 제외시설은 NDMS에서 '해제' 조치('삭제' 금지)
 - 지침변동에 따른 구분 분야 변동시설(장례식장 등) 모두 정비
- 조사결과 중점관리시설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또는 해제하였을 경우 반드시 소유자(관리자)에게 통보

□ 재난위험시설(D,E급)

○ 안전등급평가 결과 D, E급 시설

- 공공시설 :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 실시
- 민간시설 : 소유자에게 정밀안전진단 요구

○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시 재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제한·금지 등 응급조치

- 공공시설 : 기정예산이나 재난관리기금 또는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긴급 보수·보강 조치
- 민간시설 :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명령(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보수·보강 등 정비,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등)

○ 재난위험시설(D, E등급) 고시 및 안내표지 설치

- 고시 : 재난위험시설 지정 또는 해제시 공보 또는 게시판, 인터넷에 14일 이상 고시
 - 안내표지판 : 위험요소, 사용금지·제한내용,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점검 책임자 및 연락전화번호 등을 포함하여 설치
- ☞ 단, 건설공사장에 대해서는 고시 및 안내표지 설치 제외

V

행 정 사 항

- 시설관리부서 - 소관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실시(3.27.~ 4.29.)
- 조사결과 NDMS 입력(4.30.한)

- 붙임 1.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 및 관리 지침 관련공문 3부.
2. 성북구 안전관리자문단 명단(2015.01월) 1부.
3. 시설 유형별 점검 체크리스트 1부.
4.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참고용) 1부. 끝.

【별표 1】

성북구 관내 시설물 유형별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

(2015.03.23. 기준)

관리 부서	등급별	총합 계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소계	A	B	C	소계	D	E
총합계		674	651	357	229	65	23	16	7
건축물		624	602	326	215	61	22	15	7
	가스취급시설	19	19		19				
	공연시설	2	2	2					
	기타(건축물)	71	67	42	7	18	4	2	2
	노유자시설	15	15	13	2				
	대형건축공사장	3	0				3	3	
	대형건축물	39	39	37	2				
	대형광고물	10	10	10					
	대형숙박시설	12	12	3	9				
	아파트	60	59	4	43	12	1	1	
	연립주택	260	246	136	86	24	14	9	5
	운동시설	3	3	1	2				
	위락, 휴게시설	2	2		1	1			
	의료시설	14	14	13	1				
	종교시설	81	81	51	30				
	지방공공청사	23	23	11	11	1			
	집회시설	3	3	3					
	판매시설	7	7		2	5			
	시설물	50	49	31	14	4	1	1	
	교량	5	5		5				
	기타(시설물)	36	35	29	4	2	1	1	
	육교	4	4	2	1	1			
	지하차도	4	4		4				
	축대, 옹벽, 석축	1	1			1			

【별표 2】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 대상

■ 시설물 분야

구 분		대 상 범 위	비 고	관리부서 (해당 시설수)
도로 시설	교 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 「도로법」 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 100m 미만 교량 - 「농어촌도로정비법」 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 비법정도로 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도로시설과 : 5
	터 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터널로 - 연장 500m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농어촌도로의 터널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터널 제외	
	육 교	◦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		도로시설과:4
	지하차도	◦ 연장 100m미만으로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지하차도		도로시설과:4
지하도상가		◦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		
스 키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수관리 스키장내 삭도시설(리프트 등) 포함 < 삭제 , 삭도궤도로 분류 변경 > 		
삭도·궤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수관리(관광시설 케이블카 등) ※ 스키장내 삭도시설(리프트 등) 포함 	궤도운송법 적용 대상	
유원 시설		◦ 전수관리(종합유원시설 및 일반유원시설)	관광진흥법 적용 대상	
토 목 공사장	대형공사장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장	착공계 접수시 지정	
	중단된 공사장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장		
수 상 안전 시설	유선 및 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톤 이상 동력선 전수 ※ 해수면에서 내수면으로 운항하는 유·도선포함 (운항구간 중 최종 종착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관리)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적용대상(해수면 제외)	
	수상레저시설	◦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보유 사업장	수상레저안전법 적용대상(해수면 제외)	
	래프팅보트 시설	◦ 래프팅보트 보유 사업장		
물놀이 위험구역		< 삭 제 >		
기 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및 지역		건축과:1 도시계획과:1 안전치수과:1 주거정비과:1 환경과:28

※ 총공사비는 공사예정금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으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보상비는 제외하며 조달청계약인 경우 조사가격을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을 말한다.

■ 건축물 분야

구 분		대 상 범 위	종 류	비 고	
공공업무시설		연면적 1,000㎡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강정책과:1 사회적경제과:1 자치행정과:19 행정지원과:2	
고주 내	아 파 트	5층 이상 ~ 15층 이하		※다세대주택 제외 건축과:1 주택관리과:59	
	연립주택	연면적 660㎡초과, 4층 이하		※다세대주택 제외 건축과:184 주거정비과:16 주택관리과:60	
중소형 건축물		판매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비디오·게임제공업 등)	일자리경제과:7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 고시원 등	문화체육과:4 보건위생과:8	
		운수시설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여 객선터미널		
		문 화 및 집 회 사 실	공연장	연회관, 음악당, 서어커스장 등	문화체육과:2
			집회장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회의장 등	건축과:3
			관람장	경마장, 경륜장, 자동차 경기장 등	
			전시장	박람회장,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등	
		의료시설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등	어르신복지과:2 의약과:12	
		장례식장	장례식장		
		종교시설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등	문화체육과:81	
위락시설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 영업소	보건위생과:2			

구 분		대 상 범 위	종 류	비 고
중소형 건축물	관광휴게시설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7호가,나,다목에 따른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로 연면적 300㎡ 이상 ~ 5,000㎡ 미만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수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2호가,나,다목에 따른 수련시설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수련관, 수련원, 유스호스텔	
	노유자시설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1호가,나,다목에 따른 노유자시설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 단독공동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제외 복지정책과:5 어르신복지과:10
	운동시설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3호가,나목에 따른 운동시설로 연면적 500㎡ 이상 ~ 5,000㎡ 미만	체육관,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등	문화체육과:3
대형건축물		◦ 11층 이상 ~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 30,000㎡ 미만의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건축물 용도) 제2항제21호 및 제22호 제외 건축과:32 교통지도과:1 문화체육과:6
대형광고물		◦ 건물옥상에 설치된 높이 4m 이상 · 폭 3m 이상(옥상간판 등)		도시디자인과:10
건축 공사장	대형공사장 중단된 공사장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10,000㎡ 이상 공사장		※ 착공계 접수 즉시 지정 주거정비과:3
위험물 시설	가스 취급시설	충전소, 판매소, 제조소, 지역정압기 < 삭제 >		주거상업준 공업-지역 내 시설 환경과 : 19
	유독물 취급시설	유독물 보관저장소 < 삭제 >		
	화학물질 취급시설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공장 < 삭제 >		
공 단	일반공단	전수관리 < 삭제 >		
	농공단지	전수관리 < 삭제 >		
신 업 중 증	번지점프장	◦ 전수관리 < 삭제, 기타로 분류 변경 >		
기 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및 지역	번지점프장, 짚와이어 등 고위험이 유발되는 고정식 레포츠시설, 단독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등	주거정비과:1 (석축)

※ 공공업무시설, 공동주택, 중소형건축물, 대형건축물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 연면적은 허가·신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 중소형건축물로 분류된 시설 중 대형건축물(11층 이상 ~ 16층 미만, 연면적 5,000㎡ ~ 30,000㎡)에 입주되어 운영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 건축물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별표 3】

시설물 안전등급 평가기준

안전등급	상 태	평가(조치)기준
A등급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이상이 없는 시설
B등급	○ 보조부재에 경미한 손상이 있는 양호한 상태 ⇒ 간단한 보수정비 필요	○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시설
C등급	○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 조속한 보수 또는 보강 필요	○ 보수·보강이 이행되어야 할 시설로서 현재 결함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요부재의 결함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
D등급	○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강재의 피로균열, 콘크리트의 전단균열, 침하 등)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사용제한 여부 판단 필요 ⇒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 필요	○ 조속히 보수·보강하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현재의 결함상태가 지속되면 단면손실 등으로 기능상실 우려가 있는 시설 ○ 보수·보강 이행시까지 결함의 진행 상태를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 결함사항의 진전이 우려되어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 검토가 필요한 시설
E등급	○ 주요부재에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시설물을 즉각 사용 금지 및 개축이 필요한 상태 ⇒ 사용금지, 개축 등 필요	○ 적정 유지보수 시기를 일실한 시설물로서 보수·보강하는 것보다 철거, 재 가설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시설 ○ 철거, 재가설 전까지 재난조짐 상태의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 붕괴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 보강 등 응급 조치와 사용제한·금지조치가 필요한 시설